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칙 및 헌장

국제 헌장 및 부칙

2023년 7월 11일 개정

국제라이온스협회

목적

봉사단체로서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라이온스 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한다.

세계 인류의 상호 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公德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소망서

지역사회와 인도주의 봉사 부문에서 세계적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임무서

라이온스 클럽,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이 인도주의 봉사 사업 및 교부금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 및 부칙

2023년 7월 11일 개정

제1조 - 명칭	10
제2조 - 목적	10
제3조 - 회원	10
제4조 - 문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 항 - 문장	11
2 항 - 명칭 및 문장 사용	11
3 항 - 색채	11
4 항 - 슬로건	11
5 항 - 모토	11
제5조 - 임원 및 국제이사회	
1 항 - 임원	11
2 항 - 회원 자격 및 대의원 자격	11
3 항 - 헌장지역 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12
4 항 - 선거, 임원의 임기, 공석	12
5 항 - 국제이사회의 권한	14
6 항 - 회의	15
7 항 - 투표권	15
8 항 - 보수	15
9 항 - 해임	15
제6조 - 국제대회 및 대의원	
1 항 - 개최일 및 장소	15
2 항 - 대의원 할당	15
3 항 - 대의원 투표	17
4 항 - 정족수	17
5 항 - 대리투표	17
제7조 - 지구조직	17
제8조 - 클럽	
1 항 - 클럽차터	17
2 항 - 클럽회원 자격	17
제9조 - 개정	
1 항 - 개정 절차	18
2 항 - 공고	18

부칙

제1조 - 명칭 및 문장	18
---------------	----

제2조 - 국제임원 선출

1 항 - 국제대회 선거	19
2 항 - 제3부회장 후보자 자격	19
3 항 -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20
4 항 - 후보자 추천 및 추천증명	20
5 항 - 대표권	22
6 항 - 국제지명위원회	22

제3조 - 임원의 임무

1 항 - 회장	23
2 항 - 부회장	23
3 항 - 행정임원	23

제4조 국제이사회 위원회

1 항 - 상임위원회	24
2 항 - 자격증명, 의사규칙, 결의, 선거관리위원회	24
3 항 - 특별위원회	24
4 항 - 위원장, 공석	24
5 항 - 지명제한	25

제5조 - 국제이사회 회의

1 항 - 정기회의	25
2 항 - 특별회의	25
3 항 -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26
4 항 - 정족수	26
5 항 - 집행위원회	26

제6조 - 국제대회

1 항 - 대회에 관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27
2 항 - 공식통고	27
3 항 - 대회 임원	27
4 항 - 지구총재 - 회의 참석 경비	27

제7조 국제 회계

1 항 - 회계감사	27
2 항 - 동결자금	27

제8조 - 지구 조직

1 항 - 지구 조직의 권한.....	28
2 항 - 지구의 최저조건.....	28
3 항 - 지구 재편성	28
4 항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29
5 항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30
6 항 - 해임	30
7 항 - 지구임원회.....	30
8 항 - 지구임원회 회의.....	31

제9조 - 지구 연차대회 및 선거

1 항 - 지구(단일, 정, 복합) 연차대회.....	31
2 항 - 지구 연차대회의 권한.....	31
3 항 - 클럽 대의원 수 산출방식	32
4 항 -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32
5 항 - 지구의 절차 관련 자격요건.....	33
6 항 - 지구총재/지구 제1 및 2부총재 선거.....	33
7 항 - 동수득표 처리.....	38
8 항 - 지구 연차대회 보고	38

제10조 - 지구임원의 임무

1 항 - 복합지구 의장.....	38
2 항 - 지구 임원.....	39

제11조 - 클럽회원

1 항 - 클럽 조직	43
2 항 - 클럽 명칭.....	43
3 항 - 신청절차.....	44
4 항 - 클럽의 의무	44
5 항 - 스태터스 쿼/차터 취소.....	44
6 항 - 클럽 탈퇴.....	44
7 항 - 회원 분류.....	45
8 항 - 이중 회원.....	45

제12조 회비

1 항 - 회원보고서	45
2 항 - 국제회비.....	45
3 항 - 가산금	47

제13조 - 의사규칙과 절차

47

제14조 - 개정

1 항 - 개정 절차	48
2 항 - 공고	48
3 항 - 발효일	48

첨부 A - 회원분류	49
--------------------------	----

첨부 B - 회원분류

표	52
----------------	----

집행임원 및 국제이사
2023-2024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

DR. PATTI HILL
Edmonton, Alberta, Canada

직전국제회장

BRIAN E. SHEEHAN
Bird Island, Minnesota, USA

제1부회장

FABRÍCIO OLIVEIRA
Catolé do Rocha, Brazil

제2부회장

A.P. SINGH
Kolkata, India

제3부회장

MARK LYON
Brookfield, Connecticut, USA

국제이사

BEN APELAND
Bozeman, Montana, USA

JITENDRA KUMAR SINGH CHAUHAN
Agra, UP, India

BARBARA GREWE
Hanstedt, Germany

JEFF CHANGWEI HUANG
Guangzhou Guangdong, China

TIMOTHY IRVINE
Beeliar, WA, Australia

RONALD EUGENE KELLER
Millersport, Ohio, USA

GYE-OH LEE
Seoul, Republic of Korea

ROBERT K.Y. LEE
Honolulu, Hawaii, USA

RAMAKRISHNAN MATHANAGOPAL
Coimbatore, TN, India

MANOEL MESSIAS MELLO
Bauru, Brazil

AHMED SALEM MOSTAFA
Heliopolis, Cairo, Egypt

JAMES “JAY” COLEMAN MOUGHON
Clifton, Virginia, USA

MAHESH PASQUAL
Battaramulla, Sri Lanka

SAMIR ABOU SAMRA
Adma, Lebanon

KOJI TSURUSHIMA
Sapporo Hokkaido, Japan

PIRKKO VIHAVAINEN
Juva, Finland

JÜRIG VOGT
Steffisburg, Switzerland

LEE VRIEZE
Jim Falls, Wisconsin, USA

BALKRISHNA BURLAKOTI
Kathmandu, Nepal

FENG-CHI CHEN
Lingya Dist., Kaohsiung City, Taiwan

MARIE T. CUNNING
Phoenix, Arizona, USA

MARCEL DANIËLS
Kortenbergh, Belgium

LUIS JESUS CASTILLO GAMBOA
Urb, Panama

BABU RAO GHATTAMANENI
Gachibowli, India

MASASHI HAMANO
Saitama, Japan

EDWIN GUY HOLLANDER
Lawrenceburg, Kentucky, USA

SUNG-GIL JUNG
Iksan-si, Korea

HALLDOR KRISTJANSSON
Hafnafjodur, Iceland

DANYAL KUBIN
Cankaya, Türkiye

JOHN A. LAWRENCE
Chestertown, Maryland, USA

STEVEN MIDDLEMISS
Hudson, New Hampshire, USA

HANS J. NEIDHARDT
Potwin, Kansas, USA

JOANNE OGDEN
Emo, Ontario, Canada

ANTHONY PARADISO
Rockville Centre, New York, USA

KATSUKI SHIROSAKA
Hyogo, Japan

국제본부 사무국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전화: (630) 571-5466 • 팩스: (630) 597-9655

국제 헌장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라이온스협회)”이다.

제2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봉사단체로서의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 (b) 라이온스 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한다.
- (c) 세계 인류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 (d)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e)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公德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 (f)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 (g)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h) 지역사회에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헌장의 규정 하에 적법하게 조직되고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 클럽으로 구성된다.

제4조 문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문장.** 본 협회 및 차터를 받은 클럽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2항. **명칭 및 문장 사용.** 협회의 명칭, 문장, 기타 로고의 사용은 본 부칙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3항. **색채.**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협회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협회의 모토는 ‘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이다.

제5조 임원 및 국제이사회

1항. **임원.**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이상은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구 총재, 행정임원, 그 외 국제이사회가 지명하는 임원으로 한다.

2항. **회원 자격 및 대의원 자격.** 행정임원을 제외한 본 협회의 임원은 차터를 받은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각 임원은 해당 직책으로 인해 국제대회와 소속 지구(단일, 정 및 복합) 연차대회의 정규 대의원이 되지만, 클럽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3항. **현장지역 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국제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국제이사로 구성되며, 아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매 짝수 해에는 총 18명의 국제이사를 선출한다. 미국 및 미국령,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5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유럽에서 3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3명, 인도, 남아시아 및 중동에서 4명,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에서 1명, 아프리카에서 1명이다.

매 홀수 해에는 총 17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미국 및 미국령,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6명, 캐나다에서 1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유럽에서 3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4명, 인도, 남아시아 및 중동에서 2명이다.

4항. **선거, 임원의 임기, 공석.**

- (a) 집행임원과 국제이사는 본 협회의 국제대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정부 규제 또는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임원 및 국제이사 선출을 위한 대체 절차를 국제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b) 행정임원은 국제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국제이사회 방침을 따른다.

- (c) 지구총재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d) 집행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이 선포된 후부터 차기 국제대회에서 후임자의 당선이 선포될 때까지로 한다.
- (e) 지구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선출된 해의 국제대회 폐회 시부터 차기 국제대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 (f) 국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 때까지로 한다.
- (g) 당선 또는 지명여부에 관계없이, 재임 중인 집행임원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후임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 (h) 어떠한 국제이사나 지구총재도 자신의 직책을 승계할 수 없다.
- (i)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국제이사회는 잔여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울 수 있다.
- (j)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에서 잔여임기의 공석을 채울 때까지 다음 서열의 부회장이 회장 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k) 사망, 사임, 또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부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에서 잔여임기의 공석을 채울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단, 임명된 부회장이 상위 직책을 맡고자 하면 국제헌장 및 부칙이 정한 방식대로 선출되어야 한다. 상기의 임명된 부회장이 상위 직책에 입후보하는 시점에서 현직 국제이사 또는 국제이사를 역임한 클럽 회원도 후보 자격을 갖는다.

- (l)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직전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협회의 후임 직전회장이 채울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 (m) 재해나 사고로 국제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잔여 구성원이 차기 국제대회에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국제이사회의 임무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 (n) 재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가장 최근에 국제회장을 역임한 전국제회장이 10일 이내에 잔여임기 동안의 공석 충원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에 모든 전국제회장 과 전국제이사를 소집한다. 이러한 회의는 소집한 후 15일 ~ 20일 내에 국제본부에서 개최한다. 회의 참석자에게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른 합리적 비용을 협회에서 지급한다.
- (o)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이사회에서 잔여기간 동안 공석을 채울 수 있다.

5항. 국제이사회의 권한.

- (a) 명시되고 암시된 본 협회의 모든 권한은 국제이사회에 귀속되며, 국제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 (b) 국제이사회는
 - (1) 동 이사회 및 본 협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통제권, 감독권을 가진다.
 - (2) 본 협회의 업무, 자산, 기금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3) 차기 회계연도의 예상 수지를 나타내는 예산안을 작성하고 승인한다. 국제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2/3가 호명투표에서 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회계연도의 예산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의 수입이나 예비금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지출도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

6항. **회의.** 국제이사회의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는 부칙에 따라 소집하고 개최한다.

7항. **투표권.** 국제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마다 1표씩의 투표권을 가진다.

8항. **보수.** 행정임원 및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는 임원들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단, 직무 수행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은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감사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9항. **해임.** 선거로 선출된 본 협회의 모든 임원은 국제이사회 전체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제6조 국제대회 및 대의원

1항. **개최일 및 장소.** 본 협회의 국제대회는 매년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2항. **대의원 할당.** 굿 스탠딩 차터 클럽은 국제대회 개최 전 월 1일자 국제협회 기록에 준하여 회원 25명마다, 또는 나머지가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대체대의원을 협회의 모든 국제대회에 파견할 권한을 가진다. 단, 각 클럽은 최소 1명의 대의원 및 1명의 대체대의원을 파견할 권한을 가진다. 본 항의 과반수는 회원 13명 이상을 가리킨다. 대의원 및 대체대의원 선정은 클럽회장, 총무, 또는 기타 공식 권한을 가진 동 클럽 임원이 서명한 대의원 자격증명서로 증명된다. 상기 클럽임원이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클럽이 소속된 지구(단일 또는 정)의 지구총재 또는 당선총재가 서명한 대의원 자격증명서로 증명된다. 각 대회 규정에서 정한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굿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전회장은 국제대회 및 소속 지구 연차대회(단일, 정,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는 감사 규정에 따라, 전회장이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 연차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 참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

본 협회의 전국제이사는 국제대회 및 소속 지구 연차대회(단일, 정,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국제회장과 전국제이사는 각 대회에서 소속 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이사회 상임위원회의 지명이사에서 활동하는 각 전총재 및 전의장, LCIF 집행위원회에서 지명이사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 임기 중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총재 또는 전의장은 각 국제대회에서 소속 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복합지구 의장은 임기 중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지구 의장은 국제대회에서 소속 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항. **대의원 투표.** 직접 참석하여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표, 대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1표씩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4항. **정족수.** 직접 참석하여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이 각 총회의 정족수를 구성한다.

5항.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단일, 정, 복합) 및 국제 수준 투표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제7조 지구조직

라이온스 클럽의 영역은 본 부칙에 명시된 대로 지구 및 행정 단위로 분할된다.

제8조 클럽

1항. **클럽차터.** 여기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이사회는 동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클럽을 조직하고 차터를 승인하는 전권을 가진다.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클럽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라이온스 클럽은 국제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헌장이 발부되었을 때 차터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라이온스 클럽이 차터를 받는다는 것은 본 국제 헌장 및 부칙을 비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에서 수시로 발효되는 법에 준하여 본 헌장 및 부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2항. **클럽회원 자격.** 소속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덕성과 신망이 있는 법적 성인은 정식으로 승인된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입회는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9조 개정

1항. **개정 절차.** 본 헌장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연례 회의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의해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자격증명을 받은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개정안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국제대회에 상정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 (b) 국제이사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회기의 7월 1일 현재 국제협회의 클럽 총 회원수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또는 복합지구들의 연차대회 결의로 승인을 받은 경우.

2항. **공고** 개정안은 투표가 실시될 국제대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라이온지나 협회의 기타 공식 출판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명칭 및 문장

모든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 회원, 라이온스 지구, 또는 모든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 회원, 라이온스 지구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모든 단체(합법적 또는 자연적, 법인이나 단체)는 헌장의 조항이나 국제이사회 방침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협회 및 라이온스 클럽의 명칭, 문장, 기타 표식을 사용, 제작, 배포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합법적 또는 자연적, 법인이나 단체)도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면 동의와 면허없이 협회와 라이온스 클럽의 명칭, 문장, 기타 표식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국제임원 선출

1항. **국제대회 선거.** 본 협회의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및 국제이사 전원은 국제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 소속된 클럽 회원은 해당 대회에서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항. **제3부회장 후보자 자격.**

- (a) 제3부회장 후보자 자격은:
 - (1)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 (2)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자,
 - (3) 부칙 또는 헌장에 명시된 대로 소속지구(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증명을 받은 사람. 이 추천증명은 해당 후보자가 제3부회장에 당선된 이후 협회의 모든 상위 임원직 입후보 시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 (b) 본 부칙 혹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임원직 공석을 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만이 제2부회장직에, 제2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만이 제1부회장직에, 제2부회장직과 제1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만이 협회의 국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본 부칙 혹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나 부회장직 공석을 채워야 할 경우, 현국제이사나 국제이사를 역임한 회원만이 해당 공석을 채우는데 지명될 수 있다.

3항.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은:

- (a)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 (b) (1) 본 협회의 정지구 지구총재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자, 또는
(2) 잠정지구의 총재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된 경우. 잠정지구는 (1) 해당 임기 중 또는 임기 후 굿 스탠딩 클럽이 20개에 달하거나 정지구로 승격, 또는 (2) 10년 이상 잠정지구인 상태여야 한다.
- (c)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지구(단일, 정, 복합)의 추천증명을 받은 사람.

4항. 후보자 추천 및 추천증명.

- (a) 본 부칙 또는 헌장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채워질 임원직 후보자(어떤 증명이나 추천도 필요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지구총재 이외의 모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추천증명은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준해 각 단일 지구, 정지구의 총재와 사무총장, 복합지구 총재협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증명해야 한다. 추천 증명서는 국제이사 후보자의 경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는 국제대회 개최 60일 전까지, 제3부회장 후보자의 경우 90일 전까지 국제본부에 도착되어야 한다. 추천증명은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발송 후 3일 이내에 우송된 원본에 의해 동일한 문서임이 확인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추천증명서가 제출되어 국제본부에 접수될 때까지는 어떠한 추천도 유효하지 않다. 모든 추천은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선출될 자격을 갖게 하는 추천에 연이은 3회의 국제대회까지만 유효하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 (i) 추천을 철회할 수 없으며, (ii) 다른 추천은 모두 유효하지 않으며, (iii) 사망, 자격상실, 입후보 취소 시, 원래의 추천결의는 무효가 된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는 추가 추천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임원 출마 시기와 발표 방식에 관한 내용이 각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제시되어 있다면, 모든 추천은 최초의 것이든 아니든,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모든 후보자는 우선 후보자의 소속지구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 (b) 추천증명서에는 1개의 임원직을 명기해야 하며, 어떠한 후보자도 자신의 추천증명서에 기재한 직책 이외의 임원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모든 지구(단일, 정 및 복합)는 국제이사회의 임원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 (c) 국제이사 출마를 위한 추천증명은 3회의 연속된 국제대회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당선되지 못하면, 해당 후보가 추천을 다시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3부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추천 증명은 3회의 연속된 국제대회 동안 유효하며, 최대 2차례 연속된 추천이 가능하다. 이 연속된 기간 동안 당선되지 못하면, 해당 후보가 다시 추천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5항. 대표권.

- (a)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클럽을 갖고 있는 지구(단일, 정, 복합)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의 이사 중 1명 또는 캐나다 이사 중 1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는 국제대회 개최 60일 전까지 본 부칙 혹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천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국제본부로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옆에 인쇄된다.
- (b) 동일한 단일 또는 복합지구에서 2명 이상의 회원이 국제이사로 동시에 활동할 수 없다. 이사가 선출된 지구에서 타 지구로 옮겨갈 경우, 해당 직책의 임기는 다음 대회 폐회 시에 종료되며, 동 대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 (c) 회장 또는 부회장은 동일 지역에서 동시에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규정한 대로 동일한 단일 또는 복합지구에서는 불가하다.

6항. 국제지명위원회. 각 국제대회에서 또는 대회 개최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9명의 지명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들은 모두 협회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동일한 단일 또는 복합지구에서 2명 이상 임명할 수 없다. 회장은 대회 기간에 선거가 실시되는 날짜 및 시간을 정해야 한다. 지명위원회는

- (a) 적절한 추천증명서를 협회 법률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모든 후보자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받고 반대의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 (b)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성명의 순서를 결정한다.
- (c) 선출될 임원직에 대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자들의 성명을 국제대회 총회에서 지명한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용지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기타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어떠한 직책이든 동점표를 얻은 경우, 당해 국제이사회에서 동점표 후보자 중 1명을 선출한다.

국제대회에서 대의원과 대체대의원은 자격증명을 받는다. 대의원, 대체대의원 또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등록비를 납부한 후에만 세션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3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본 협회의 모든 대회와 모든 국제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국제협회의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고 통상적으로 직책과 관련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서열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항. **행정임원.** 국제이사회가 임명한 행정임원의 임무는 국제이사회의 적절한 의결에 따라 각 임원에게 배정된다.

제4조 국제이사회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회장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장기기획위원회는 8명 이하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사회에 보고한다.

- (a) 감사
- (b) 헌장 및 부칙
- (c) 대회
- (d) 지구 및 클럽봉사
- (e) 재정 및 본부운영
- (f) 지도력 개발
- (g) 장기기획
- (h) 회원개발
- (i) 마케팅
- (j) 봉사활동
- (k) 테크놀로지
- (l)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위원회.

2항. **자격증명, 의사규칙, 결의, 선거위원회.** 각 국제대회에서 또는 대회 개최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동 대회에서 활동할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격증명위원회, 결의위원회, 선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대회 개최 전 60일 이내에, 국제회장은 동 대회에서 활동할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사규칙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3항. **특별위원회.**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나 국제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제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4항. **위원장, 공석.**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본인이 지명한 모든 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권한을 갖는다.

5항. **지명제한.** 본 부칙 또는 헌장에서 부여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지명권을 행사할 때, 회장은 협회의 전국제임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원이 한 회계연도에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지명제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른 지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전국제임원 지명의 임기는 오직 1년이지만, 후임회장이 지명제한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떠한 전국제임원이든 재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위원 중 최소 1명은 국제회장 소속 클럽이 위치한 헌장지역과 다른 헌장지역 클럽 출신이어야 한다.

제5조 국제이사회 회의

1항. **정기회의.** 국제이사회 정기회의는 국제대회 개최 직후 그 도시에서 개최한다. 추가로, 10월 또는 11월 및 3월 또는 4월에 국제회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마지막 정기회의는 국제대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개최하되, 동 국제대회 개최 전에 폐회한다.

2항. **특별회의.** 국제이사회의 특별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다. 또 5명의 이사가 서면(편지, 이메일, 팩스 또는 전화 포함)으로 요청하여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소집한다. 이 경우 마지막 요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본부에서 이사회 각 구성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한 특별회의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3항.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국제이사회는 우편(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전체 구성원 3/4 이상의 서면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5명이 착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투표가 유효하려면 최초의 우편발송 이후 30일 이내에 신속한 방법으로 국제협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4항. **정족수.** 본 부칙 또는 현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이사회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이다.

5항. **집행위원회.** 국제회장, 직전국제회장, 국제부회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지명한 국제이사회 구성원 1명이 동 이사회의 집행위원회가 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을 경우에만 동 이사회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어떠한 결정도 변경, 수정, 파기할 수 없다.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동 위원회 위원 4명의 출석이다.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결정이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동 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참석하면 전화회의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득표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단, 지구총재직 공석을 채우는 경우, 국제이사회가 업무처리에 관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참여하면 우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득표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6조 국제대회

1항. **대회에 관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제대회의 일체 사항은 국제이사회에서 관리, 통제, 감독한다.

2항. **공식 통고.**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사람은 국제대회 개최일 5일~60일 이전에 대회 개최장소, 일시를 공표하는 국제대회 공식 통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협회의 공식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3항. **대회 임원.** 본 협회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처장, 재무총장이 국제대회의 임원이 된다. 회장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대회에 필요한 다른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4항. **지구총재 - 회의 참석 경비.** 국제이사회는 감사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지구총재(선출 혹은 임명된)가 교육 수업에 참가할 목적으로 사용한 합리적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 국제 회계

1항. **회계감사.**

- (a) 국제이사회는 매년 협회의 회계장부에 대해 공인 회계사가 진행하는 감사를 실시한다.
- (b) 국제이사회는 매년 요약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청 시, 라이온스 클럽에 제공한다
- (c)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동결자금.** 헌장 및 부칙에 위배될지라도, 모든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에서 협회의 자금이 국제이사회에서 선택한 통화로 자유롭게 송금되는 것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동 이사회의 호명투표에서 전체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국제이사회는 해당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에 있는 라이온스 클럽 회원, 라이온스 클럽, 지구에 국제 헌장 및 부칙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된 권리와 특권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며, 중단 기간은 해당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에서 협회자금의 송금이 제한되어 있는 동안, 또는 동 권리와 특권이 상기에 규정된 국제이사회의 유사 조치로 복원될 때까지이다.

제8조 지구조직

1항. **지구조직의 권한.** 지리적 영역은 국제이사회가 규정하는 지구(단일, 정 및 복합)와 행정 단위로 분할된다.

2항. **지구의 최저조건.** 지구가 조직될 때, 국제이사회 2/3의 득표로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지구는 35개의 굿 스탠딩 클럽과 1,250명의 이상의 굿 스탠딩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항. **지구 재편성.** 복합지구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단일지구, 또는 1개 이상의 정지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1개 이상의 기존 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복합지구는 국제이사회에 재편성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편성 요청서는 클럽 35개, 회원 1,250명 이상인 각 단일 또는 정지구 연차대회 및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과반수 득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개 이상의 정지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복합지구는, 통합되는 정지구 중 클럽 35개, 회원 1,250명 미만인 지구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승인된 재편성 요청서를 국제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편성으로 복합지구 내에서 정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편성 요청서는 요청한 각 정지구가 클럽 35개, 굿 스탠딩 회원 1,250명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한다. 모든 재편성 요청의 승인을 검토할 때, 국제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요인을 강화할 수 있고, 정지구 당 클럽 및/또는 회원수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가 재편성 요청을 승인할 경우, 이사회 승인일자 이후의 국제대회 폐회와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단, 각 신생 정지구를 이루는 클럽의 대의원들이 국제이사회 승인일자 이후로 동 국제대회 이전에, 재편성되는 지구(단일, 정, 복합)의 연차대회와 더불어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하고 헌장 및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기존의 한 정지구를 실질적으로 재편성하는 경우, 동 정지구를 구성하는 클럽 대의원들은 복합지구 연차대회에 참가한 정지구의 대의원 총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4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구총재들은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의장으로 활동할 현 또는 전총재 1명을 포함시켜야 하고,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직전총재를 1명 이상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복합지구 의장을 포함한 전총재 수가 지구총재 수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복합지구 의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회의의 각 구성원은 총재협의회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는 각 사안에 대해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총재협의회회는 또한 협회의 현, 전 국제회장, 국제부회장, 현, 전 국제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각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복합지구 의장은 취임할 때 현 또는 전총재여야 한다. 복합지구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

5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모든 업무 관리, 임원 선임, 회의 개최, 자금 관리, 지출 승인, 각 복합지구 헌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6항. **해임**. 총재협의회 과반수의 요청으로, 복합지구 의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총재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복합지구 의장이 임명되었든 선출되었든 방식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복합지구 의장은 총재협의회 전 구성원 2/3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7항. **지구임원회**. 각 단일 및 정지구는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의장인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각 단일, 잠정, 복합지구 헌장에서 규정한 절차로 선출 또는 임명될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 겸 재무총장, 각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기타 클럽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각 지구총재는 지역위원장직을 본인의 임기 동안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활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구총재 임기 동안 지역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둔다. 각 지구(단일, 정, 복합)는 지구 헌장 및 부칙에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가 선출 임원이며 해당 직책의 임무는 국제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클럽 회원은 소속 클럽이 위치한 지역이나 지대에서만 지역위원장이나 지대위원장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다.

8항. **지구임원회 회의.** 지구임원회 회의는 각 현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 회의에서 투표권은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2부총재, 지역위원장(본 직책이 지구총재 임기 동안 활용되는 경우), 지대위원장, 지구 사무총장, 지구 재무총장 (또는 사무 겸 재무총장), 각 지구(단일, 정, 복합) 현장 및 부칙에서 지정한 지구임원회의 기타 구성원에게 부여된다.

제9조 지구 연차대회 및 선거

1항. **지구(단일, 정, 복합) 연차대회.** 각 단일, 정지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연차대회는 국제대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복합지구는 매년 연차대회를 개최해야 하며, 국제대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단일 및 정지구는 본 부칙이나 현장에 따라 지구총재를 선출해야 한다. 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개최하는 정지구 대의원 총회는 본 항의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정지구 연차대회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연차대회의 일시 및 장소는 각 단일, 정, 복합지구 현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항. **지구 연차대회의 권한.** 지구(단일, 정, 복합) 연차대회는 본 협회의 현장 및 부칙에 준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적절히 의결할 수 있으며, 단일 및 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협회의 조치를 권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3항. **클럽 대의원 수 산출방식.** 협회와 소속지구(단일, 정, 복합)에서 굿 스탠딩 상태인 클럽은 각 지구(단일, 정, 복합) 연차대회 개최 전월 1일자 국제협회 기록에 준해 클럽에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 당, 그리고 나머지가 과반수 이상일 때 연차대회에 대의원 1명과 대체대의원 1명을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단, 각 클럽은 최소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대체대의원을 파견할 권한이 있다. 나아가 각 지구(단일, 정, 복합)는 각 현장 및 부칙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위의 클럽 대의원 할당 인원과 별개로 지구 내 클럽에 소속된 전총재에게 온전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직접 출석하여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은 각 연차대회에서 임원 선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인의 선택대로 1표씩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본 조항에서 언급한 나머지의 과반수는 5명 이상을 의미한다. 모든 신생클럽 및 대회 개최 전에 신입회원을 가입시킨 기존 클럽은 국제본부 기록일에 준하여 클럽에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을 기준으로 대의원 할당 인원수를 배정받는다. 자격 증명 마감 15일 전까지 체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굿 스탠딩이 유지되며 자격 증명 마감시간은 각 대회 규정에서 정한다.

4항.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 (a)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 (b)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c) 선출될 지구에서 현재 제1부총재 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d) 현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거나 지구 연차대회 시 지구 제1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 한해, 본 부칙 또는 헌장에서 명시한 지구 제2부총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추가로 전현직 지구임원회 구성원으로 1년간 활동한 바 있는 클럽 회원은 본 항 (c)의 요건을 충족한다.

5항. **지구의 절차 관련 자격요건.** 국제임원 출마 의사표명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절차 및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득표수는 각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본 헌장에서 규정한 요건 이외에 어떠한 자격요건도 국제임원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러한 절차는 각 회기 내에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6항. 지구총재/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 (a) **지구총재.** 지구총재 선거는 비밀 서면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지구총재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에서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된다.

그 외에는, 지구총재 선거는 각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각 지구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보고된 결과는 국제이사회에 제출된다. 모든 지구총재 선거 결과는 국제이사회에서 채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사회 방침서의 규정에 준해 선거 항의가 제기된 경우, 또는 그 결과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지구총재의 임명이나 선출은 국제이사회에의 조치를 따른다.

지구가 자격을 갖춘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당선총재가 사망 또는 거부하거나, 임기 시작 전에 질병이나 기타 장애의 사유로 취임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이사회가 판단하거나, 지구총재 선거 항의 또는 법적 조치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본 헌장이나 부칙에서 규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국제이사회에서 지구총재를 임명한다.

- (b)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부총재 선거는 비밀 서면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지구 제1부총재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에서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된다. 지구 1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된 해의 국제대회 폐회 시 임기가 시작되고 다음 국제대회 폐회 시 임기가 종료된다. 지구 1부총재는 연임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지구 1부총재 선거는 각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각 지구 1부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지구 제1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 선출될 지구에서 현재 제2부총재 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4) 현 지구 2부총재가 지구 1부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와 지구 연차대회 시 지구 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 한해, 본 부칙 또는 헌장에서 명시한 지구 2부총재 자격을 갖춘 클럽 회원은 누구나 본 항 (3)의 요건을 충족한다.

- (c) **지구 제2부총재.** 지구 2부총재 선거는 비밀 서면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지구 2부총재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에서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된다. 지구 2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된 해의 국제대회 폐회 시 임기가 시작되고 다음 국제대회 폐회 시 임기가 종료된다. 지구 2부총재는 연임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지구 2부총재 선거는 각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각 지구 2부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지구 제2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 지구 2부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 (a) 클럽 회장으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이상 만료되고, 클럽이사회 구성원으로 2년 이상 활동 완료.
 - (b) 지대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또는 지구 사무총장 및/또는 재무총장으로 임기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
 - (c) 상기 중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 (4) 지구총재로서 임기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을 역임한 적이 없어야 한다.

- (d) **지구총재/지구 제1부총재 또는 제2부총재 공석.**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본 부칙 또는 헌장에 의거하여, 국제이사회가 본 항 (e)의 규정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울 때까지 지구 1부총재가 지구총재의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지구 제1 또는 2부총재 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라 공석을 채워야 한다.

- (e) **지구총재 공석 총원 절차.** 국제이사회는 헌장에 따라 선출된 지구총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총재는 동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경비 감사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임명을 할 때 -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지구총재 공석을 채울 때 - 국제이사회는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 1 및 2부총재, 참석하도록 초청된 지구 내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모든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전총재가 참석한 회의에서 결의한 권고안을 고려해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동 회의는 국제이사회의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 개최 15일 전에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지구총재 또는 지구총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임기를 마친 가능한 전총재의 의무이며, 또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책임도 있다. 동 회의 결과를 초청장 증빙 및 참석자 명단과 함께 7일 이내에 국제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장의 임무이다. 참석 초청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회의에 참석한 각 라이온은 본인이 선택한 지구총재직 후보자에게 1표를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f) **지구총재 선출 - 신생지구.** 지구가 최초로 조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굿 스탠딩 클럽수와 회원수를 확보한 이후의 첫 연차대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본 부칙에 명시된 지구총재 후보 자격요건은 해당 지구가 설립된 지 3년이 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구가 되기 전 해당 지구의 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자격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7항. **동수득표 처리.** 각 지구 헌장 및 부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또는 제2부총재 선거에서 동수일 경우,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에 포함된 방식으로 해결한다.

8항. **지구 연차대회 보고.** 각 단일, 정, 복합지구 연차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무총장은 연차대회 회의록 사본 1부를 국제본부로, 사본 1부씩을 각 지구총재에게 발송한다. 각 지구 내 클럽이 서면으로 사본을 요청하면 동 클럽에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회기가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각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은 지구(단일, 정, 복합)의 동 회기의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사본 1부를 각 지구(단일, 정, 복합)의 국제임원, 지구총재, 클럽 총무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지구임원의 임무

1항. **복합지구 의장.** 복합지구 의장은 복합지구의 관리 책임자이다. 모든 행위는 총재협회의 권한, 지시 및 감독을 조건으로 한다.

복합지구 의장은 총재협회와 협력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a) 본 협회의 목적을 추진한다.
- (b) 협회 및 복합지구 방침, 프로그램,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을 지원한다.
- (c) 총재협의회에서 수립한 복합지구의 목표와 장기 계획을 문서화하여 활용하게 한다.
- (d) 회의를 개최하고, 총재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 (e) 복합지구 연차대회 계획을 추진한다.
- (f) 지구총재 간의 화합과 단결을 창출 및 촉진시키고자 하는 국제이사회나 총재협의회의 노력을 지원한다.
- (g)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 (h)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부여한 기타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 (i) 임기 만료 시, 모든 복합지구 회계, 기금, 기록을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한다.

2항. **지구 임원.** 지구 임원은 다음과 같다.

- (a) 지구총재. 협회의 국제임원으로서,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 하에 소속 지구 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또한, 지구의 최고 관리책임자가 되며, 지구 임원회를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여 지구의 회원 증강을 이룬다.
 - (2) 지구 수준의 글로벌 액션팀을 감독하고, 다른 지구 임원들이 회원 증강 및 신생클럽 조직을 적극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3) 다음의 지구 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현 지구 실행 계획을 감독한다.

- a. 신생클럽 조직
 - b. 회원 순증가 달성
 - c. 효율적인 클럽 운영 보장
 - d. 클럽 및 지구 수준에서 지도력 개발 및 기술 교육 제공
 - e. 클럽의 유의미한 인도주의 봉사 실시 및 보고 장려
 - f. 국제재단 지원 및 홍보, 클럽과 회원들의 국제재단 기부 권장
- (4) 표준 지구 부칙에 명시된 대로 지구의 행정 운영을 감독한다.
 - (5) 클럽이 국제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더 나은 회원 관리 및 협회 내 굿 스탠딩을 유지하도록 활동을 돕는다.
 - (6) 지구 대회, 지구임원회, 기타 지구 회의 참석 시 회의를 주재한다.
 - (7)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 (b)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부총재는 지구총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지구총재의 수석 행정 보좌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여 지구의 회원 증강을 이룬다.
 - (2) 지구의 현 실행 계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 지구총재 및 지구 제2부총재와 함께 지구의 강점 및 약점을 검토한다. 지구 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중인 지구 계획 초안을 개선하고 추가로 개발한다.
 - (4) 다음 해에 지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개발 및 시행할 가장 효과적인 팀을 찾아 준비시킨다.

- (5) 미래의 지구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클럽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한다.
- (6) 지구총재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침에서 지정하는 직무와 기타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 (7) 지구총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구위원회를 감독한다.
- (8) 모든 지구임원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부재 시 모든 회의를 관장한다.
- (9)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 (10) 지구예산 편성에 참여한다.

(c)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는 지구총재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여 지구의 회원 증강을 이룬다.
- (2) 지구의 현 실행 계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역 및 지대위원장과 연락하는 지구 연락원 역할을 하며, 클럽 건전성을 지원하는 성공적인 지역 및 지대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4) 클럽 개발을 지원하는 자료를 숙지한다.
- (5) 지구총재직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
- (6) 지구총재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침에서 지정하는 직무와 기타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 (7) 지구총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구위원회를 감독한다.
- (8) 모든 지구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부재 시 모든 회의를 관장한다.
- (9) 지구예산 편성에 참여한다.

(d) **지역위원장.** 지구총재 임기 동안 지역위원장직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위원장은 지구총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소속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여 지구의 회원 증강을 이룬다.
- (2) 지구의 현 실행 계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클럽과 지대의 참여를 독려한다.
- (3) 소속 지역 내 지대위원장의 활동과 지구총재가 지정하는 지구위원회 위원장의 활동을 감독한다.
- (4) 클럽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회원 증강, 우수한 지도력, 의미 있는 봉사를 독려하여 클럽 발전을 지원한다.
- (5) 지구 운영에 대해 숙지하고, 발전에 필요한 지도력 기술을 강화한다.
- (6) 지구 임원 또는 국제이사회 방침이 요구하는 직무 및 기타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한다.

(e) **지대위원장.** 지대위원장은 지구총재 및/또는 지역위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소속 지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여 지구의 회원 증강을 이룬다.
- (2) 지구의 현 실행 계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클럽의 참여를 독려한다.
- (3) 소속 지대에서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원장으로서 동 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소집한다.
- (4) 클럽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회원 증강, 우수한 지도력, 의미 있는 봉사를 독려하여 클럽 발전을 지원한다.
- (5) 지구 운영에 대해 숙지하고, 발전에 필요한 지도력 기술을 강화한다.
- (6) 국제이사회가 지구 임원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직무 및 활동을 수행한다.

- (f) **사무총장과 재무총장** (또는 사무 겸 재무총장). 지구 사무총장, 지구 재무총장, 또는 지구 사무 겸 재무총장은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을 추진한다.
 - (2) 국제이사회가 지구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직무 및 활동을 수행한다.
- (g) **기타 지구임원회 구성원**.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또는 국제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각 단일, 정, 복합지구 헌장이나 부칙의 규정에 따른 직무 및 활동을 수행한다.

제11조 클럽회원

1항. **클럽 조직**. 조직된 라이온스 클럽(들)이 존재하는 곳을 포함하여 지명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지구총재의 동의 및/또는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하고 차터를 받을 수 있다. 차터를 받을 클럽(들)이 소재하는 지역은 상기에 명시된 대로 지명이 있어야 하고 변경될 수 있다.

2항. **클럽명칭**. 각 클럽의 명칭에 클럽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지역에 2개 이상의 클럽이 있을 경우, 각 클럽은 구별되는 명칭을 추가해야 한다.

3항. **신청절차.** 모든 그룹, 클럽, 모임은 국제이사회 방침서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본 협회에 라이온스 클럽 차터 신청을 할 수 있다.

4항. **클럽의 의무.** 굿 스탠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클럽은:

- (a) 본 헌장 및 부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 회원에게서 국제회비 및 지구(단일, 정, 복합) 회비와 클럽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총당할 최소한의 연간 회비를 걷어야 한다.
- (b) 국제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정규 보고서를 국제본부로 제출한다.
- (c)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을 준수한다.
- (d) 국제이사회 방침에서 수시로 채택하는 클럽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클럽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5항. **스태터스 퀴/차터 취소.** 본 협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모든 클럽은, 국제이사회의 재량으로 지구총재와 협의하여 스태터스 퀴에 처하거나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스태터스 퀴에 처한 모든 클럽은 동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권을 상실한다.

6항. **클럽 탈퇴.** 모든 클럽은 본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국제이사회에서 수용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고, 클럽의 모든 기금과 자산을 적절히 처리하고, 클럽 헌장을 반납하고, '라이온스' 문장 및 기타 본 협회의 모든 표식 사용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제이사회는 수용을 보류할 수 있다.

7항. **회원 분류.** 라이온스 클럽의 개별 회원은 클럽이 사회의 승인 하에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할인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 자유회원, 우대회원 중 하나로 구분된다. 그러한 회원유형 별로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라 규정된 권리, 특권, 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류의 회원은 라이온스 클럽이 정하는 대로회비를 납부해야 하며(클럽이 회비를 납부하는 명예회원은 제외), 지역사회에서 라이온스 클럽의 호의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평생회원의 경우, 향후의 국제회비를 대신하여 US\$650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그 자격은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라 승인된다. 모든 전국제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요구되는 회비나 승인절차 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갖는다.

8항. **이중회원.**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동시에 2개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회비

1항. **회원보고서.**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식과 기한 내에, 각 클럽은 모든 신입회원의 명단을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국제이사회에서 정한대로 모든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항. **국제회비.**

- (a) 6월과 12월 회원보고서에 표시된 각 클럽의 회원수에 기준하여 모든 클럽 회원에게 반기분 회비 US\$23.00를 부과하며, 각 클럽은 아래 (b)와 (c)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국제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 (a) 6월과 12월 회원보고서에 표시된 각 클럽의 회원수에 기준하여 모든 클럽 회원에게 반기분 회비 US\$24.00를 부과하며, 각 클럽은 아래 (b)와 (c)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국제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a) 6월과 12월 회원보고서에 표시된 각 클럽의 회원수에 기준하여 모든 클럽 회원에게 반기분 회비 US\$25.00를 부과하며, 각 클럽은 아래 (b)와 (c)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국제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b) 국제이사회에서 채택한 가족회원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의 회비를 적용한다.
- (1) 첫 번째 가족회원은 상기 (a)항에 명시한 대로 반기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뒤이은 유자격 가족회원은, 가구 당 추가되는 유자격 회원수가 4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 (b) (1)항에서 명시한 첫 번째 가족회원이 납부한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반기분 회비를 납부한다.
- (c) 국제이사회에서 채택한 학생회원 프로그램의 경우, 유자격 학생회원은 상기 (a)항에서 규정한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반기분 회비를 납부한다.
- (d) 레오클럽을 스폰서한 라이온스 클럽은 국제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레오클럽 연회비를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3항. **가산금.** 국제이사회는 클럽 체납액에 대해 법적 최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제13조 의사규칙 및 절차

- (a) 본 헌장 및 부칙, 또는 각 지구(단일, 정, 복합)나 클럽의 헌장 및 부칙, 또는 회의를 위해 채택한 규정, 또는 현지 법령이나 관습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협회, 국제이사회와 그 산하에 지정된 모든 위원회, 모든 지구(단일, 정, 복합)나 조직, 그 산하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모든 라이온스 클럽이나 조직, 그 산하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또는 행위의 순서나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규칙을 따른다.
- (b) 국제이사회는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서 조항에서 제기되는 항의, 분쟁, 요청이나, 또는 지구(단일, 정, 복합)나 국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는 의사규칙을 수립할 권한을 갖는다.
- (c) 협회의 회원은 모든 항의, 분쟁, 요청이 동 의사규칙의 조건을 준수하여 처리되며, 그 결정에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
- (d) 각 지구는 수시로 개정되는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헌장 및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모든 지구 헌장 및 부칙은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석한다.

제14조 개정

1항. **개정 절차.** 본 부칙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에 의해 국제대회에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동 대회에서 자격을 증명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개정안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국제대회에 상정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 (b) 국제이사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회기의 7월 1일 현재 국제협회의 클럽 총 회원수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또는 복합지구들의 연차대회 결의로 승인을 받은 경우.

2항. **공고** 개정안은 투표가 실시될 국제대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라이온지나 협회의 기타 공식 출판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3항. **발효일.** 헌장 및 부칙은 개정조항에 추후의 발효일을 명시하지 않는 한, 동 개정안을 채택한 국제대회 폐회 시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A - 회원분류
이사회 방침서 제17장, A.3항

라이온스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정회원:** 자격을 갖춘다면, 클럽, 지구, 협회의 모든 직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투표를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의무에는 회비의 신속한 납부, 클럽 활동에 참여, 지역사회에서 라이온스의 호의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자유회원:** 지역사회에서 전출, 또는 건강이나 기타 타당한 사유로 클럽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으나 해당 클럽의 회원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클럽회원으로서 클럽 이사회가 그러한 자격을 부여한 회원이다. 자격은 매 6개월 마다 클럽이사회에서 재검토한다. 자유회원은 임원직을 맡거나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회의나 대회에서 투표할 자격은 없지만, 클럽이 지구회비 및 국제회비를 포함시켜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 c. **명예회원:** 해당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클럽이 소재한 지역사회를 위해 탁월한 봉사를 수행하여 클럽이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클럽은 해당 회원의 입회비, 국제회비, 지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이 갖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d. **우대회원:** 15년 이상 라이온으로 활동한 클럽 회원으로서 질병, 쇠약, 고령, 해당 클럽이사회에서 정한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자신의 정회원 자격을 포기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지구회비 및 국제회비를 포함하여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지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 e. **평생회원:** 라이온으로서 2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클럽,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히 봉사해 온 라이온, 또는 중환자, 또는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 온 70세 이상의 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회원 자격을 갖는다.

(1) 해당 클럽이 국제협회에 추천한다.

(2) 클럽이 향후의 국제회비 전액을 대신하여 US\$65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국제협회에 납부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한, 정회원의 모든 특권을 갖는다. 전출을 희망하고 다른 라이온스 클럽의 초청을 받은 평생회원은 자동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클럽이 평생회원에게 합리적 금액의 회비를 부과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라이오네스 회원 출신으로서 현재 라이온스 클럽의 정회원이거나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라이온스 클럽의 정회원이 된 회원은 자신의 과거 모든 라이오네스 경력을 평생회원 자격에 적용시킬 수 있다. 2007년 6월 30일 이후 정회원이 된 라이오네스 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목적으로 라이오네스 봉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 f. **준회원:** 우선적인 회원자격이 다른 클럽에 있으나, 해당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진 회원이다. 준회원의 자격은 클럽이사회 초청으로 부여되며 매년 재검토한다. 클럽은 회원 보고서에 준회원을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직접 참석한 클럽회의에서 클럽 문제에 관해 투표할 수 있지만,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 연차대회나 국제대회에 대의원으로서 클럽을 대표할 수 없다. 준회원은 클럽, 지구, 국제협회 임원뿐만 아니라 클럽을 통한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의 위원회도 맡을 수 없다. 준회원에 대해서는 국제회비 및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해당 클럽이 합리적 금액의 회비를 준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g. **후원회원:**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으로서 현재 클럽의 정회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없지만 클럽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클럽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회원이다. 후원회원의 자격은 클럽이사회의 초청으로 부여된다.

후원회원은 직접 참석한 클럽회의에서 클럽 문제에 관해 투표할 수 있지만,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 연차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대의원으로서 클럽을 대표할 수 없다.

후원회원은 클럽, 지구, 국제협회 임원뿐만 아니라 클럽을 통한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 위원회도 맡을 수 없다. 후원회원은 지구회비, 국제회비, 소속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 h. **할인회원:** 가족회원, 학생 신분, 또는 이 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원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기타 할인 회원 프로그램의 기준을 만족하여 할인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다. 회원의 신분은 클럽 이사회가 확인한다. 할인회원은 지구나 국제 회의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지구 및 국제 회비를 포함하여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범주의 회원은 클럽 대의원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첨부 B
의원 분류표

범주	신속한 회복 남부 (클럽, 지구, 국제)	클럽 활동 참여	호의적 이미지를 주는 이행	클럽, 지구, 국제의원 출마 자격	투표권	지구 및 국제대회 대의원 자격
정회원	예	예	예	예	예	예
후원회원	예	예, 가능 시	예	아니오	클럽 사안만 해당	아니오
준회원	클럽회비만 납부	예, 가능 시	예	아니오	지구 연차대회 (본래의 클럽) 클럽 사안만 해당 (양쪽 클럽)	아니오
한인회원 [2024년 1월 1일 발효]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명예회원	클럽에서 국제회비 및 지구회비 납부	예, 가능 시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평생회원	지구회비 및 클럽회비만 납부 국제회비는 납부하지 않음.	예, 가능 시	예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자유 회원	예	예, 가능 시	예	아니오	클럽 사안만 해당	아니오
우대회원	예	예, 가능 시	예	아니오	예	예

메모

메모

메모

메모

국제협회

윤리강령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진정한
우정은 봉사활동의 실행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진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나의 시간, 노동 및
수단을 제공한다.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OFFICIAL PUBLICATION OF LIONS CLUBS INTERNATIONAL

LA-1.KO 7-23 Printed in USA